

심 사 보 고 서

【서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】

1996. 10. 4

총 무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1996. 9. 10
- 나. 제출자 : 서 산 시 장
- 다. 회부일자 : 1996. 9. 23
- 라. 상정일자 : 1996. 10. 2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보건과장 유명동)

가. 제안 설명

- 가)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및 제35조의 규정에의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국민건강생활을 실천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코자 함.

나. 주요 골 자

- 가) 담배자판기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담배자판기를 설치하여 판매한 자
19세 미만인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,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,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지 아니한 자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함(안 제2조).
- 나) 위반 사실을 관계공무원이 확인조사 하였을 때에는 위반자인서를 징구하도록 함(안 제4조).
- 다)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위반자에 대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 함(안 제5조).

라) 과태료의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이의서를 접수한 부과권자는 관할 법원에 통보 비송 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받도록 함(안 제7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

○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(과태료) 및 제35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 절차)의 규정에 의거 동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 및 운영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

- 없었음

5. 토 론

- 없었음

6. 소수의견

- 없었음

7. 심사결과

- 원안대로 가결

제안번호	제 98 호
의결년월일	1996. . . . (제 회)

서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

제출자	서 산 시 장
제출년월일	1996. 9 . 18 .

서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

의안	98
번호	

제출년월일 : 1996. 9. 10.

제출자 : 서산시장

1. 제안이유

○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위법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코저 함.

2. 주요골자

가) 담배자판기 설치가 아닌 장소에 담배자판기를 설치하여 판매한 자.

19세 미만인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,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,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지 아니한 자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 함 (안제 2조).

나) 위법 사실을 관계공무원이 확인조사 하였을 때에는 위반자인서를 징구하도록 함 (안제 4조).

다)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자에 대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 함 (안제 5조).

라) 과태료의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이 이익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이의서를 접수한 부과권자는 관할 법원에 통보 비송 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받도록 함 (안제 7조).

서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안

제1조 목적: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부과대상)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르 한다.

1.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판매한 자
2.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
3.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지 아니한 자
4.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

제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①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
②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제5조 청문결과의 위반행위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.

제4조(자인서 징구) 관계공무원이 위법사실을 확인·조사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자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. 다만, 자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정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.

제5조(청문)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제6조(납부통지) ①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, 확인한 후 이를 납부할 것을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과태료 부과·징수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.

②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 발부일 부터 30일이내로 한다.

이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후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 기한을 지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.

제7조(이의신청)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.

제8조(과태료의 귀속)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서산시 수입으로 한다.

제9조(준용규정) 과태료의 부과,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법규에 의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제1호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과 태 료 의 부 과 기 준

(제 3 조 관 련)

(단위 : 만원)

위 반 내 용	근 거	과 태 료		
		1 차	2 차	3 차
1. 담배자판기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담배 자판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	법 제9조 제2항	10	30	50
2. 19세 미만인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	법 제9조 제3항	10	20	30
3.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 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지 아니한 자	법 제9조 제4항	20	30	50
4.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	법 제12조 제2항	20	30	50

[별지 제1호 서식]

제 호

수 신

제 목 과태료처분 통지

1.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서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
조례 제2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.

가. 위반일시 :

나. 위반내용 :

2.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
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()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
월 일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3.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납부기한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
있으며,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.

첨 부 :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. 끝.

서 산 시 장

[별지 제2호 서식]

제 호	과테로 납부통지서	영수필 통지서	영 수 증
시.군 읍.면.동 리 번지	남	남	남
위반사항	과테	과테	과테
관	료	료	료
임시	목	목	목
적외	수입	수입	수입
입	향	향	향
납부기한	년 월 일	년 월 일	년 월 일
금 액	원	원	원
위의 과테료를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○○시군 금고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.			
년	월	일	인

제 호	과테로 납부서	영수필 통지서	영 수 증
시.군 읍.면.동 리 번지	남	남	남
위반사항	과테	과테	과테
관	료	료	료
임시	목	목	목
적외	수입	수입	수입
입	향	향	향
납부기한	년 월 일	년 월 일	년 월 일
금 액	원	원	원
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. 납부자성명 서명 또는 날인 (수납기관용)			
년	월	일	인

제 호	과테로 납부서	영수필 통지서	영 수 증
시.군 읍.면.동 리 번지	남	남	남
위반사항	과테	과테	과테
관	료	료	료
임시	목	목	목
적외	수입	수입	수입
입	향	향	향
납부기한	년 월 일	년 월 일	년 월 일
금 액	원	원	원
위의 금액을 영수 하였고 통지합니다			
년	월	일	인
금고	인	인	인
(납부자용)			

제 호	과테로 납부서	영수필 통지서	영 수 증
시.군 읍.면.동 리 번지	남	남	남
위반사항	과테	과테	과테
관	료	료	료
임시	목	목	목
적외	수입	수입	수입
입	향	향	향
납부기한	년 월 일	년 월 일	년 월 일
금 액	원	원	원
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. 년 월 일 금고 인 (납부자용)			

과 테 로 부 과 징 수 대 장

일련 번호	통지서 번호	과테로 처분 통지일	독촉장		납부기한		과테로 금액		납부명		납부일자		과테로 납부일	이의신청일		이의신청일 법원용보일	비 고	
			당초	독촉	과테로	금	성	명	주	소	이	의						

자 인 서

시설명(업소명) :

대표자 성명 :

주민등록번호 :

소재지 :

전화번호 :

본인은 서산시극민건강증진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.징수조례 제2조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위반 하였음을 자인 합니다.

다 음

- 1.
- 2.
- 3.

년 월 일

주소 :

성명 :

서명 또는 날인

서 산 시 장 귀 하

[별지 제7호 서식]

제 호			
수 신			
제 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			
<p>1.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5조의 관련입니다.</p> <p>2.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하여 서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.징수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		
과 태 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	성 명		주민등록 번호
	주 소		
과태료 납부 통지일자		과 태 료 금 액	
과태료 처분 부과관청		이의제기 년 월 일	
이 의 제 기 내 용			

- 첨 부 1.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.
2.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사본 1부.

서 산 시 장

과 태 로 납 부 독 촉 장

제 호

납 부 의 투 자	① 성 명		③ 주민등록 번호	
	② 주 소			
	④ 과태료 납부 통지서 번호			
	⑤ 위 반 사 항			
	⑥ 과태료 금액	⑦ 당 초 납부기일		

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 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에
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
하게 됩니다.

년 월 일

서 산 시 장